

대구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합20534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

담당변호사 이원창

피고주식회사 A

변론 종결2024. 11. 28.

판결 선고2024. 12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60,128,787원 및 그중 659,265,627원에 대하여 2024. 8. 5.부터 2024. 11. 9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재판장판사성경희

판사김종우

판사이호선

별지